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○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2023. 5. 30.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. 6. 1.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-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3년 수입· 지출계획이 변경됨.
- 이에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1)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256억 3천 9백만원에서 319억 9천 2백만원으로 63억 5천 3백만원 증가하였고,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4억 9천 9백만원에서 14억 3천 9백만원으로 9억 4천만원 증가하였음.

^{1) 「}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은</u>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^{1. 「}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^{2. 「}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○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(예치금)' 금액이 당초 227억 6천만원에서 300억 5천 3백만원으로 72억 9천 3백만원 증가하여 32% 변경되었음.

〈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〉

〈수입 계획〉

〈지출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당	초	변	경	증	감
계		26	5,138	3	3,431	7	,293
이 자 수	厄		499		1,439		940
예 치 회	금수	2	5,639	3	31,992	6	5,353

						(단기		iしせ)
구		분	당	초	변	경	증	감
	계		26	,138	3	3,431		7,293
비사	융 자 업	성 비		3,278		3,278		-
예	치	山	22	2,760	3	30,053		7,293 (32%)
기	본 경	비		100		100		_

4. 검토 의견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72억 9천 3백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63억 5천 3백만원) 및 이자수입(9억 4천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(72억 9천 3백만원)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 재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〉

(단위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		
성색자급 / 한뒤자급 / 제구자급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	
재무활동(행정국 남북협력과)	22,760	30,053	7,293		
보전지출(남북교류협력기금)	22,760	30,053	7,293		
여유자금예치	22,760	30,053	7,293		

※ 자료근거 :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,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3.5.30.) 재구성

- 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'재무활동(예치금)' 금액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32.0%, 72억 9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-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-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기금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한편, 남북관계의 경색과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2023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현액(32억 7천 8백만원) 대비 7.2%(2억 4천 3백만원)에 불과하고, 하반기에도 저조한 사업비 집행으로 인하여 불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.
 - 사업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사용되지만,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반복되는 불용원인 파악 및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<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세부 집행내역 >

(2023.5.31. 기준, 단위: 백만원)

구분	예산현액	집행액	집행률	세부 사업실적
비융자성사업비	3,278	243	7.2%	2023년 평화통일안보 교육 공모사업
기본경비	100	7	7%	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

○ 또한, 예치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별 지출 일정을 감안하여,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최대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□ **예치금 관리현황** (2023. 5. 31. 기준)

ㅇ 시금고 예치 현황

(단위 : 천원)

총 액	시금고 예치금			
	공공예금	정기예금, MMDA		
32,266,002	466,002	31,800,000		

ㅇ 세부 내역

(단위 : 천원)

계정과목	금 액	기 간	이 율
공공예금	466,002	_	2.02%
저기에그	4,000,000	6개월	4.64%
정기예금	25,000,000 12개월	4.92%	
MMDA	2,800,000	수시입출금	3.42%
합 계	32,266,002		

전 문 위 원	김 정 덕	입법조사관	이태기	
	_ ,			